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336
----------	------------

제안연월일 : 2023년 5월 3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현행 「주민투표법」 규정 내용과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주민투표 실시구역 관련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하며,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운영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별지 서식의 기재오류 및 누락 사항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민투표법 개정('16.5.29.)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외국민” 용어를 삭제함(안 제2조제4항).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안 제3조).

- 서울시는 행정구역 상 “리”가 없으므로 “동·리·반”을 “동·반”으로 수정함(안 제8조제2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심의사항 중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를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2조제2항).
- 위원 구성 관련 시장의 자의적인 위원 구성을 배제하기 위해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삭제함(안 제12조제3항).
- 심의회 부위원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심의회 의장 직무 대행자를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에서 “부위원장”으로 수정함(안 제14조제2항).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단서 중 “통·리·반”을 “통·반”으로 한다.

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의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안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안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 ② 심의회 의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안 제14조의 제목“(심의회 운영 등)”을“(심의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에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안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증명서 교부의 경우 주민투표실시구역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다.

안 제20조 중 “법 제13조제2항”을 “제10조 4항 및 법 제13조제2항”

으로 한다.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부칙(시행일)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일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서울특별시시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구 ○○동(○ 책 중 ○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구 ○○동(○책 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자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자치구별로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

-- 청구인서명부(전자 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

-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

-----.

<삭 제>

<삭 제>

-----.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신 설>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삭 제>

3.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의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4. (개정안 제3호와 같음)

5. (개정안 제4호와 같음)

② 심의회 의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

<신 설>

의회의 의장은 행정1
부시장이 맡으며, 심
의회는 의장 및 부의
장 각 1명을 포함하
여 7명 이상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이 경
우 공무원이 아닌 위
원이 전체위원의 과
반수가 되도록 하여
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 중 시
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고, 특정 성별이 위
촉직 위원 수의 10분
의6을 초과하지 않도
록 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
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
는 시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
투표 관련 전문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
촉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삭 제>

제14조 (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신 설>

<신 설>

②·③ (생략)

④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

제14조(심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4조(심의회 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부위원
장-----

--.

③ (개정안과 같음)

④·⑤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15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처리기간) ① --

-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
-----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처리기간) ① --

-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
-----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 . 다만, 법 제16조제2항과 같

<신 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은 조 제3항에 따른 증명서 교부의 경우 주민투표실시구역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

----- 제10조 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 7. 14.)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구 ○○동(○책 ○원)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할하고, 주민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서명을 요청한 주민자가 다수인 경우, 각 주민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최자 및 최(○책 중 ○원) 단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순번을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본읍면동 행정동명(읍·면·동)·행정리·동명(동)·주소·읍·동이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한다.
 5.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일치여부를 기재한다.
 6.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7. 주민자가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서명요령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서명을 하여야 하고, 위조·변조 등 그 실제 여부를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 7. 14.)

청구인대표자명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명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용특별사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본읍면동 행정동명(읍·면·동)·행정리·동명(동)·주소·읍·동이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한다.
 4. 청구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다만, 국민투표청구,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구 ○○동(○책 ○원)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할하고, 주민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서명을 요청한 주민자가 다수인 경우, 각 주민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최자 및 최(○책 중 ○원) 단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순번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할하고, 주민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생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할 때에는, 투표인 서명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투표를 그려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명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명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청구사유명명서란에는 서용특별사 관할구역 중 특정 구, 동 또는 통·반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제외지역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구 ○○동(○책 ○원)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할하고, 주민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서명을 요청한 주민자가 다수인 경우, 각 주민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최자 및 최(○책 중 ○원) 단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순번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할하고, 주민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생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할 때에는, 투표인 서명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투표를 그려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명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명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청구사유명명서란에는 서용특별사 관할구역 중 특정 구, 동 또는 통·반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제외지역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7. 14>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위 사항은 「주민등록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 등록청구요지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 작성요령 1. 증명하려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등록대상자의 성명을 >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명,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 재한다). 4. 다만,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7. 14>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등록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등록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등록청구요지란에는 주민등록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한다. 2. 증명하려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등록대상자의 성명을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명,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 재한다). 4. 다만,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7. 14>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등록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등록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 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등록청구요지란에는 주민등록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한다. 2. 증명하려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등록대상자의 성명 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명,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 재한다). 5. 다만,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6.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위 사항은 주민등록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 등록청구요지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 작성요령 1. 증명하려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등록포 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등록청구요지란에는 주민등록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 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등록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등록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등록청구요지란에는 주민등록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 여 기재 2. 증명하려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등록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등록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 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등록청구요지란에는 주민등록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한다. 2. 증명하려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대상자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위 사항은 「주민등록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 등록청구요지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 작성요령 1. 증명하려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등록포 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등록청구요지란에는 주민등록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등록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등록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등록청구요지란에는 주민등록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증명하려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등록포 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등록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등록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 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등록청구요지란에는 주민등록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증명하려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등록포 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7. 14.>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년 월 일</p> <p>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서울특별시청 귀하</p>			
<p>* 첨부 서류 : 관련 자료</p> <p>* 작성요령</p> <p>1. 설명란에는 청구인의 설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설명을 기재한다.</p> <p>2. 설명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p> <p>3. 주소란에는 토지명 및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명,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한다.</p> <p>4. 다만,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p> <p>5.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가 기재란에 부족한 경우에는 오지란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p>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7. 14.>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			
신청 취지			
신청 사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서울특별시청 귀하</p>			
<p>* 첨부 서류 : 증명자료</p> <p>* 작성요령</p> <p>1. 설명란에는 청구인의 설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설명을 기재한다.</p> <p>2. 설명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p> <p>3. 주소란에는 토지명 및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명,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한다.</p> <p>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p>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년 월 일</p> <p>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귀하</p>			
<p>* 첨부서류 : 관련자료</p> <p>* 작성요령</p> <p>1. 설명란에는 청구인의 설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설명을 기재</p> <p>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p> <p>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오지란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p>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			
신청 취지			
신청 사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귀하</p>			
<p>* 첨부서류 : 증명자료</p> <p>* 작성요령</p> <p>1. 설명란에는 청구인의 설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설명을 기재</p> <p>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p> <p>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년 월 일</p> <p>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서울특별시청 귀하</p>			
<p>* 첨부서류 : 관련자료</p> <p>* 작성요령</p> <p>1. 설명란에는 청구인의 설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설명을 기재</p> <p>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p> <p>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오지란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p>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			
신청 취지			
신청 사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귀하</p>			
<p>* 첨부서류 : 증명자료</p> <p>* 작성요령</p> <p>1. 설명란에는 청구인의 설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설명을 기재</p> <p>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p> <p>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둔,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로,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 중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를 “구분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로,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을”을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따른”을 “따른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의”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 “각호에 관한”을 “각 호의”로, “위하여 서울특별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4. 전자투표 · 전자개표의 실시
5.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회 의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5항에 따른”을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처리기간의”를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로 한다.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증명서 교부의 경우 주민투표실시구역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 대담과 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옥외집회를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 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서울특별시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구 ○○동(○ 책 중 ○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입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기재한다.
3. ○○구 ○○동(○책 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자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서울특별시장 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 (시장의 책무) 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u>재외국민 또는 외국인</u>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u>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u>는 주민투표권이 있다.</p> <p>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제2조 (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외국인</u>----- ----- ----- ----- -----.</p> <p>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 ----- ----- --- <u>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u> ----- ----- <u>외국인</u>은 -----.</p> <p>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삭제></p>

2.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② 청구인서명부는 자치구별로 동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
---- 구분하여 -----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자치구별로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

-----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다른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의 -----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각 호의 -----

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2.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신 설>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신 설>

-- 위해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1.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3. ----- 심사

4.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5. ----- 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② 심의회 의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

의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제 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심의회 운영) ① 법 제12

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신 설>

<신 설>

②·③ (생략)

④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 설>

제15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증명서 교부의 경우 주민투표실시구역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

----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

-----.

③ -----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은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휴대용 확장장치만을 사용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까지의 옥외집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호별방문
2.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

<신 설>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
-----.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대담과 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옥외집회를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장장치 또는 휴대용

<신 설>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주민투표청구서등) ① 법

<삭 제>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서 및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
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4호서
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 및 이의신
청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공표·공고 방법) 법 제8
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
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
항에 따른 공고는 공보·게시판
·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
넷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
으로 한다.

<신 설>

<삭 제>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
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
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

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 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현 행

【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16. 7. 14.>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주소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청구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 별지 제3호서식 】 <개정 2016. 7. 14.>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주소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개 정 안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주소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신청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중 특정 구, 동 또는 통반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주소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현 행

【 별지 제4호서식 】 <개정 2016. 7. 14.>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사실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 별지 제5호서식 】 <개정 2016. 7. 14.>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개 정 안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현 행

【 별지 제6호서식 】 <개정 2016. 7. 14.>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서울특별시장 귀하</p>			
<p>※ 첨부 서류 : 관련 자료</p>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p> <p>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p> <p>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p> <p>4. 청구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p>			

【 별지 제7호서식 】 <개정 2016. 7. 14.>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			
신청 취지			
신청 사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서울특별시장 귀하</p>			
<p>※ 첨부 서류 : 증빙자료</p>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p> <p>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p> <p>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p> <p>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p>			

개 정 안

【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서울특별시장 귀하</p>			
<p>※ 첨부서류 : 관련자료</p>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p> <p>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p>			

【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			
신청 취지			
신청 사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서울특별시장 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p>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p> <p>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